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16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이해식·한민수·채현일

송기헌 · 김교흥 · 이연희

양부남 • 박희승 • 신정훈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저지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사 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채용시부터 복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약류에 관한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 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의2·제 8호라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시험방법"을 "구체적인 시험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한다.
- 1. 신체검사(제22조의2에 따른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
- 2. 체력검사
- 3. 종합적성검사
- 4. 필기시험
- 5. 면접시험
- 6. 실기시험
- 7. 서류전형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또는 시험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	
로 임용될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u>
	<u>성의약품 중독자</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8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u>률</u> 」에 따른 죄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방
	법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한
	<u>다.</u>

② <u>제1항</u>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u>시험방법</u>,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1. 신체검사(제22조의2에 따른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
- 2. 체력검사
- 3. 종합적성검사
- 4. 필기시험
- 5. 면접시험
- 6. 실기시험
- <u>7. 서류전형</u>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검사 또는 시험
- ③ 제1항 및 제2항-----
- ----구체적인 시험방법----
- _____
- _____
-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 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